

서울특별시

우100-74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(02)731-6156 / 전송(02)731-6562
 처리부서: 법무담당관(시청본관 3층)/ 법무담당관 박동봉 법제담당사무관 구본상 담당 운영권

문서번호 법무 11010- 1736
 시행일자 1999. 5. 18. (년)
 (경유) (제1안)
 수신 내부 결재
 참조

| | | |
|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취급 | | 시 장 |
| 보존 | 영구 | 결재 1999. 5. 18 기획예산실장 기안 |
| 기획예산실 | 전 결 | |
| 법무담당관 | 박동봉 | |
| 기안 | 운영권 | ◎법제담당사무관 구본상 협조 |

제목 운행제한차량단속규정폐지규정 등 2건 발령

후번 제 901~902호

1. 서울특별시운행제한차량단속규정폐지규정 등 2건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고자 합니다.

- 가. 발령예정일 : '99. 5. 20.(목)
- 나. 일련번호 : 서울특별시훈령 제901~902호
- 첨부 : 1. 발령목록 1부.
- 2. 발령안 각1부. 끝.

서울특별시장

(제2안)

수신 : 홍보담당관

제목 : 시보 게재 의뢰

1. 서울특별시운행제한차량단속규정폐지규정 등 2건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로붙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시기 바랍니다

니다.

가. 발령예정일 : '99. 5. 20.(목)

나. 일련번호 : 서울특별시훈령 제901~902호

첨부 : 1. 발령목록 1부.

2. 발령안 각2부. 끝.

법 무 담 당 관

(제3안)

수신 : 받는 곳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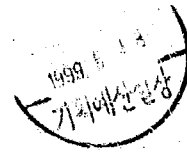
제목 : 훈령 발령 통보

1. 서울특별시은행제한차량단속규정폐지규정 등 2건을 서울특별시법 제사무처리규칙 제38조에 의거 따르불임과 같이 시보에 게재하여 발령하도록 조치하였으니 착오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발령예정일 : '99. 5. 20.(목)

나. 일련번호 : 서울특별시훈령 제901~902호

첨부 : 발령목록 1부. 끝.



법 무 담 당 관

받는 곳 : 여성개발담당관, 건설안전관리본부장(총무부장)

훈령 발령 목록

총 2 건 (페이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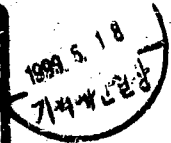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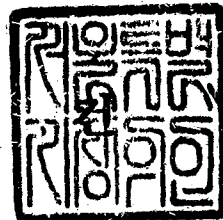
| 연 번 | 법 규 명 | 번 호 | 주 관 부 서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1 | 서울특별시사설모자보호시설운영규정폐지규정 | 제901호 | 여성개발담당관 |
| 2 | 서울특별시운행제한차량단속규정 폐지규정 | 제902호 | 건설안전관리본부 (총무부)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| | | | |

서울특별시 운행제한차량단속규정 폐지규정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9년 5월 20일

서울특별시장 고



서울특별시 운행제한차량 단속규정 폐지규정안

1.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

서울특별시 운행제한차량 단속규정은 도로법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운행제한차량 단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제정(96.4.30)되었으나,

이는 건설교통부 지침인 「운행제한차량 단속요령」 과 그 내용이 중복되고, 또한 건설교통부의 지침 정비시 수시로 동규정을 정비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요인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건설교통부 지침을 직접 적용 하도록 하는것임

2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규 : 운행제한차량 단속요령(건설교통부 지침)

제1조(목적)이 요령은 도로법(이하 “법” 이라한다)제54조 및 동법시행령 (이하 “령” 이라한다) 제2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운행제한차량의 단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~ 제11조 (생략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서울특별시훈령 제 호

서울특별시운행제한차량단속규정폐지규정안

서울특별시운행제한차량단속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

